

제재내용 공개안

1. 금융회사명 : (주)제이엠씨자산운용(舊 (주)알디자산운용)

2. 제재조치일 : 2026. 7. 22.

3. 제재조치내용

제재대상	제재내용
기관	과태료(30백만원) 부과
임원 (1명)	주의적경고 과태료(10.8백만원) 부과

4. 제재대상사실

가. 임원의 겸직 제한 위반

□ 금융회사의 상근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데도,

- (주)제이엠씨자산운용(이하 '회사')의 前대표이사* 甲(2020.4.27.~2024.7.31.)은 2020.4.27.~2021.10.19. 기간 중 A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

* 現 제이엠씨자산운용(舊 알디자산운용) 등기이사

- 2022.4.19.~2022.5.31. 기간 중 B의 사내이사(대표이사)로 등기하여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지배구조법」 제10조 제1항

나.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한 집합투자재산 운용

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,
 - 회사는 ㉡ 및 ㉢ 펀드의 집합투자규약(신탁계약서)상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「벤처기업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투자 비율(이하 '벤처신주비율')을 자산총액의 15% 이상, 이를 포함한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비율(이하 '벤처투자비율')을 자산총액의 50% 이상으로 하고, 동 요건을 갖춘 날부터 매 6개월마다 각각의 평균 비율을 유지하도록 제한하였으나,
 - ㉡펀드는 2020.9.15.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, 2020.9.15.~2022.3.14. 기간 중의 벤처신주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15%에 미달,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%에 미달하였으며,
 - ㉢펀드는 2021.11.30. 최초로 요건을 달성한 이후, 2022.5.30.~2022.11.29. 기간 중의 벤처투자비율이 최소 투자비율인 50%에 미달하는 등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한도를 각각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사실이 있음

< 관련법규 >

1. 「자본시장법」 제85조 제8호
2. 「자본시장법 시행령」 제87조 제4항 제1호